

#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안내

## 1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기한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
  -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구매시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읍검사소(☎ 063-535-6009)
  - 민간 검사소(관내 지정정비사업자 12개소)
- 참고사항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 불가

##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구 분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소·중·대형	모든 차령	2년(신차 5년)
	사업용	경·소·중·대형	모든 차령	1년(신차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	1년(신차 2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차 2년)
			차령 5년 이하	1년
		중형	차령 5년 초과	6개월
			대형	차령 2년 이하
차령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소·중·대형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3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 신고 요건 : 자동차 도난·사고·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한내 시행하지 못할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검사연장 증빙자료
- 제출처 : 정읍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63-539-5933)

### 4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과태료 금액 안내

지연기간	30일 이내	30일 초과~114일 이내	115일(최고 과태료)
과태료(원)	4만원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60만원

※ 과태료 부과후 납기경과시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개월간(최고 75%)의 증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안내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자, 미성년자 50% 감경(다른 과태료 체납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참고사항
  - 장기 미수검 차량(검사명령 1년 경과)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며, 운행정지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기한내 검사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검사기간 문자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https://www.kotsa.or.kr)
  - 검사유효기간 조회 : [TS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https://www.cyberts.kr)

# 건설기계 검사 및 과태료 안내

## 1 건설기계 정기검사

- 검사기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후 31일 이내
  -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건설기계 구매시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 검사장소
  - 전북건설기계검사소(☎ 063-211-0124)

## 2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구 분			검사유효기간
굴착기	타이어식	모든 연식	1년
로더	타이어식	연식 20년 이하	2년
		연식 20년 초과	1년
지게차	1톤이상	연식 20년 이하	2년
		연식 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	-	연식 20년 이하	1년
		연식 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	-	-	1년
모터그레이더	-	연식 20년 이하	2년
		연식 20년 초과	1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연식 20년 이하	1년
		연식 20년 초과	6개월
콘크리트펌프	-	연식 20년 이하	1년
		연식 20년 초과	6개월
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	-	1년
타워크레인	-	-	6개월
그 밖의 건설기계	-	연식 20년 이하	3년
		연식 20년 초과	1년

### 3

##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연장

- 신고 요건: 건설기계 도난·사고·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한 내 시행하지 못할 경우
- 구비서류: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연장 증빙자료
- 제출처: 정읍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63-539-5936)

### 4

##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 과태료 금액 안내

지연기간	30일 이내	30일 초과~117일 이내	118일(최고 과태료)
과태료(원)	10만원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가산	300만원

※ 과태료 부과후 납기경과시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개월간(최고 75%)의 증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안내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자, 미성년자 50% 감경(다른 과태료 체납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참고사항

- 장기 미수검 차량(검사명령 1년 경과)은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반드시 기한내 검사 바랍니다.
- 건설기계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오니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 건설기계 의무보험 안내

## 1 의무보험 과태료

- 가입대상 :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건설기계 9종
  -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트럭지게차
- 가입기간 : 의무보험 만료일 전일까지
  - ※ 가입기간 하루 경과시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대상

## 2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

- 의무보험 가입면제 : 다음의 사유로 6개월 ~ 2년 이하의 기간 중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승인을 받아 가입의무 면제 가능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 질병 ·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 ※ 가입면제는 법에 기재된 사항만 가능하므로 신청시 반드시 정읍시 교통과 차량관리팀(☎.063-539-593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 및 앞 번호판 지참 후 신청서 제출
- 의무보험 가입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면제기간 종료(2년 경과) 또는 해제 신청시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후 시청 방문하여 말긴 앞 번호판 수령

## 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사항
  - 자동차 무보험 운행 적발시 형사입건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십만원	1십만원	6십만원	3십만원	1백만원	1백만원	3십만원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4일		158일

○ 과태료 감경 안내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자, 미성년자 50% 감경(다른 과태료 체납이 없을 경우에 한함)

## 4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의사항

- 장기 미가입 차량(가입명령 1년 경과)은 직권말소 대상임으로, 반드시 기한내 보험 재가입 바랍니다.
- 조기폐차 신청 또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자동차 폐차말소일 까지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유지(미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 차량 및 이륜차 매매시 또는 이륜차 용도폐지시 역시 소유권이전일 까지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유지(미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